

핀란드의 산업의 제도

대한산업보건협회 차철환

핀란드는 인구 500만명의 산림과 호수에 싸여있는 나라로서, 이 나라의 기간산업은 풍부한 목재관련 산업으로 총수출액의 50%를 점하며, 최근에는 금속기계공업 및 전자의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핀란드의 근대산업보건제도는 전후 노동력부족과 공업화와 더불어 사업장에서 유해작업자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초기 의료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던 것인데 그 확립과정에 있어서는 1959년 ILO 권고 제112호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1. 산업의 계약

1978년 제정된 산업보건서비스법에는 기업이 노동자에 대하여 OHS(Occupational Health Service)를 제공할 법적의무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업주는 산업의를 스스로 고용하거나 OHS제공기관의 산업의 또는 전문가의 조언·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산업의와 계약을 하게 된다.

기업의 OHS 제공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기업(500명 이상)에서는 기업내에 OHS조직을 두고 산업의를 고용하며, 소규모기업은 지역보건센터(전국에 213개소가 있고 지역보건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한다)의 OHS를 이용한다. 한편 상공업단

체가 OHS조직을 만들어 회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적인 의료기관이 산업보건서비스 부문을 만들어 기업과 계약을 맺어 OHS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 산업의 실태

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의 자격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OHS의 질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지도하에 다양한 졸업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후 교육훈련코스로는 ① 기본훈련코스(경험 0-2년인 의사), ② 상급훈련코스(경험 2-5년), ③ 최상급훈련코스(경험 5년 이상)의 3종류가 설정되어 있고, 거의 국립핀란드직업보건연구소(FIOH)가 실시하고 있다.

산업의학에 관한 전문의 제도는 두종류인데, 하나는 1964년에 시작한 것으로, 인정된 전문의는 산업의학 연구기관의 행정, 대기업 OHS조직의 장 등으로 근무하며, 나라 전체의 산업의학 추진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81년에 창설된 것으로 산업보건전문주의 양성과정(4년간)이다. 이 전문의는 높은질의 OHS제공자로서, 기업내 또는 기업외의 OHS제공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한다. 지금까지 전문의인정을 받지않은 산업의는 자연도태 되어가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핀란드에서 산업의가 되는데에는 의사

가 된 후 기업에 고용되어 활동하면서 졸업후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전문분야를 습득하는가, 전문의 코스를 받아 인정을 받은 후, 기업내·외의 OHS제공 조직에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산업(보건)의의 총수는 약 1,600명(Full time;500명, Part time;1,100명, 전체회사수;약 9,500명)이다. 산업의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임상 의에 비해 높으며 인기도 좋다.

3. 산업의의 활동내용

핀란드 산업보건서비스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는, 사업주의 OHS제공에 있어서의 주체성과 독립된 산업의의 전문성이라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즉 사업주가 법에 의해서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자격을 갖춘 산업의의 지도, 조언을 얻어야만 한다. 예를들어 작업공정, 설비, 사용물질, 작업장의 변경 또는 신규채용시에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평가를 받아야만 하며, 사업주는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안을 받아들이고 작업에 따르는 건강영향이나 위험도, 정확한 작업방법, 보호구의 적정한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위생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해작업 종사자의 건강진단항목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특히 FIOH)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OHS를 행하는 산업의의 큰 직무로는 배치전 건강진단, 복직진진, 장해자의 건강(노동능력)평가 등이 있다. 노동자는 이러한 건강진단 및 평가를 받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산업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산업의는 노동자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일반 건강감시나 직장순시는 산업보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유자격 간호사(OHN)에 의해 집행되며 그들에게는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기타 직업병의 진단과 치료도 산업의의 직무이며, 직업병의 인정에 대해서도 담당 산업의가 확정·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업의학전문(FIOH)에게 보내어 진단받

도록 한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산업의는 폭로 Data와 의학적 소견을 당국에 제출해야만 한다.

4. 기 타

기업이 노동자에게 어떠한 산업보건서비스를 하고있는가 하는 감시는 사회보건성에 속하는 14개의 노동보호사무소(Labour Protection Districts)에서 집행하고 있다. 금후 핀란드에서의 산업보건 과제는 법이 제정하는 산업보건서비스를 어떻게 전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직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자영업 등은 OHS의 제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적의무가 없는 1인 자영업이나 농가에 대한 OHS의 확대가 필요하다.

5. 결 론

핀란드 산업보건제도의 특징은 서비스보급도가 고용노동자의 94%(1986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것이나, 산업보건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system은 고도로 성숙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산업보건서비스가 지역의료봉사와 밀접하게 결합해서 제공되어 중소기업노동자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하기 때문이며, 노동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관·민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1959년 직업위생기관권고에 따라 국내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능한 이상적인 system을 만들었으며, 이에따라 사업주에게는 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주고, 산업의의 독립성을 보장한 점들이 직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효과적으로 추진시켰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적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교육훈련제도를 확립한 점도 산업보건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산업보건서비스의 제공은 지역보건의료봉사와의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